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균

2023년 3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1 호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이사 및 감사) 제1항 중 '시에서 승인된 외부전문가 5인으로' 를 '그 외 이사는 시에서 승인된 외부전문가로'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한 대 희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이사 및 감사) ① 공사는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, 비상임 이사는 군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도시공사 소관업무 담당 국장 2인을 당연직으로 하고, 시에서 승인된 외부전문가 5인으로 한다. ② ~ ④ (생 략)	제6조(이사 및 감사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----------, **그 외 이사는 시에서 승인된 외부전문가로** 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